

---

# 입 법 정 보

---

2019-2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 목 차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
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8
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9
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9
10.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
1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13.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1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3
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4
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4
18.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5
1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21.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6
2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7
2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8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9
2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27.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1
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9.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2
3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24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8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8
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9
3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0
4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4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2
4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4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35
4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6
4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7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8
4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9
4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0
4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41
5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43
5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3

# 정부입법 예고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14.                      • 마감일자 : 2019. 11. 25.
- 2019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이외 민간영역의 환경 분야 업무 경력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인력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14.                      • 마감일자 : 2019. 11. 25.
-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에어돔형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재활용 유형임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사업자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9], [별표 11])
  -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안 제14조의4)
    - 1)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공정·유형이 동일한 경우, 공동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다. 폐기물 재활용 방법 개선(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별표 16])

- 1) 폐콘크리트 공시체를 원형 그대로 화단 경계석으로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 할 경우 재활용업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등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0. 14.                      • 마감일자 : 2019. 11. 25.
-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이와 관련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의 및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 의결된 바 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8에서 제15조의18까지 신설).
- 주요내용
  - 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5조의9에서 제15조의 12까지 신설)
    - 1)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되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취소여부 등을 규정함.
  - 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13 및 제15조의 14 신설)
    - 1) 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지자체장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 광역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기초지자체장도 가

능)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이 있을시 현장실사, 타당성 평가를 거쳐 위원회 심의·의결 후 선정할 수 있음.

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취소(안 제15조의17 신설)

- 1) 산업부 장관은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 자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취소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음.

라.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안 제15조의15 신설)

- 1) 상생형 지역일 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함.

마. 기타사항(안 제15조의16 및 제15조의18 신설)

- 1) 관할 행정구역 내 일자리 사업이 상생형 지역일 자리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선정일로 부터 1년마다 상생형 지역일 자리의 추진실적·지원효과·향후계획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상생형 지역일 자리의 선정·취소 및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은 산업부 고시로 정함.

####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14.                      • 마감일자 : 2019. 11. 25.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자격요건 갖춘 전문위원 설치(안 제78조의2 신설)

- 1)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임

나. 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78조의3 신설)

-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0. 14.                      • 마감일자 : 2019. 11. 25.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재외공관의장에게 신청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14.                      • 마감일자 : 2019. 11. 25.
- 행복주택 실수요자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입주범위를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창업지원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제23조의2)
    - 1) 창업기업 근로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별표5)
    - 1)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고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
  - 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설(안 별표5)
    - 1)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를 신설하여 신혼부부 계층 내 소득기준 합리화
  - 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 등 삭제 (안 별표5)
    - 1)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요건을 삭제하여 타 입주계층과의 형평성 제고

## 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0. 14.

• 마감일자 : 2019. 11. 25.

-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교과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기한을 단축하며,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를 변경할 경우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규제 완화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지원(안 제14조 및 제16조)

- 1)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 나.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안 제3조)

- 1) 교육과정 개정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변경 선정 시에도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선정 방법을 간소화

#### 다. 전자저작물 검정실시 공고기간 단축(안 제7조)

- 1) 학교 현장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가 적기 보급될 수 있도록 검정실시 공고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한 단서 신설을 통해 전자저작물 검정의 유연성 확보

#### 라.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안 제14조)

- 1)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교과목’의 도서 신청기한을 학기 시작 전 3개월로 단축

#### 마. 교육과정에 따른 검 인정도서의 검 인정 유효기간 적시(안 제11조 및 제16조)

- 1) 검 인정도서 합격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합격 공고(또는 인정도서 인정) 시 교과용도서 검 인정 유효 기간을 적시하도록 조문 개정

## 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0. 15.                      ● 마감일자 : 2019. 11. 6.
-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06호, 2019.8.20. 공포, 2019.11.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급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물 검사원의 직무를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 용기·포장검사, 그밖에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안 제97조의3)

## 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9. 10. 15.                      ● 마감일자 : 2019. 11. 25.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구에서도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민원상담인에게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6개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10.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0. 16.                      ● 마감일자 : 2019. 11. 26.
- 해양수산물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물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 1)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0. 16.                      ● 마감일자 : 2019. 11. 25.
-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7조)
    - 1) 안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등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 2) 소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함

## 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16.
- 마감일자 : 2019. 11. 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안 별표 4 제2호)
    - 1)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함.

## 13.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16.
- 마감일자 : 2019. 11. 25.
-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 기준을 통해 산정한 국가부담비율에 국비 추가 지원 근거를 위한 단서 조문을 신설하고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나. 국가부담비율이 70%이하이고, 재정자주도 평균치 35%미만인 시·군·구 중 현행 기준 국가부담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3%p 또는 5%p 가산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국비 추가지원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함

#### 1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16.

• 마감일자 : 2019. 11. 25.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제도를 효율화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임신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28조의3)

1) 19.5.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개편

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근거법령 신설(안 제28조의4)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이 정년의 연장 폐지 또는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연계(안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1)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라. 조문정정(안 제35호제5호마목)

1) 「근로기준법」 개정(제15513호, '18.3.20.공포, '18.7.1 시행)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정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조문을 정정할 필요

마. 부모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적용 정비(안 제95조의2)

1)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

모 모두에게 동시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첫 3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특례조항을 적용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9.
-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39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의5)
    - 1) (현황)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됨
    -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 해지 근거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안 제5조의6)
    - 1) (현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규정됨
    -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함
    - 3) (기대효과)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ESS 화재가 발생('17.8~'19.9, 26건)함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 확대, 공조설비의 임의 개보수 방지, 정기검사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의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 28조제4항 신설)
    - 1) ESS 설비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 나. ESS 공조시설의 임의 개조방지를 위한 공사계획신고 제도 도입
    - 1) ESS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대상을 현행 ESS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PCS)에서 공조시설로 확대(안 별표5)
    - 2)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 사항 및 기술자료에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을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안 별표8)
  - 다.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10)
    - 1)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내에 설치하거나 이차전지 용량 1,000kWh이상인 ESS 설비는 1년 1회, 이외의 ESS 설비는 2년 1회로 단축

## 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81호, 2019.7.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확대(안 제 15조의6)

- 1) 법 제18조의7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으로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토록 함

18.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현재 농어업인의 소득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장이 원천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추후 근로자 본인이 해당기간의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여금 개별 납부 기한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 확대(안 제 3조제1항제2호)

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안 제24조제1항)

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개선(안 제57조제3항)

라. 자료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자료 확대(별표2의3)

마. 기타 자구 수정(안 제25조의4·제74조제3항제4호)

- 1) 시행령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법률상 용어로 변경
- 2) 「국민연금법」상 외국환매매는 자본거래를 의미하므로, 인용조항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 변경

## 19.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에서 “강사” 로 명칭 변경과 4대 보험 공통 서식의 통일성강화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시간강사→강사)(별지 제6호·제7호)
  - 나. 환급금 적기 지급하여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식 변경(별지 제8호)
  - 다. 서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문구 재조정(별지 제15호·제20호·제20호의2 및 제21호의2)

##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하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칭하는 명칭과 동일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를 ‘시설의 장’에서 ‘시설 설치 운영자’로 변경함(안 별표4, 별표9)

## 21.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축산법」 이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공포, 2020. 1. 1.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가축의 종류’ 중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인 기러기를 시행령으로 상향함(안 제2조 개정)
- 나. ‘종축’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등 ‘종축’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 수정사의 교육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가축 개량 및 수정사 시험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변경허가 사유 및 축산업 허가 관련 서식을 보완함
- 마.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확인사항을 강화함
- 바. 보수교육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업허가자 교육 및 점검 관련 사항을 개선함
- 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 3의3 개정)
- 아. 가축시장 개설 시에는 계류시설 등을 갖추고,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가축 사육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2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실효성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9.8.20.공포, ‘20.2.21.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신설)

- 1) 특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 4) 특구 관련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특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의2제2항 신설)

- 1)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

2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10. 17.
- 마감일자 : 2019. 11. 26.

○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93조제1항·3항 개정)

나. 본인 희망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안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1호의2 서식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함(안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 신설)

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내용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 함(안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 삭제)

##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18.                      ● 마감일자 : 2019. 10. 31.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배출저감제도 시행( '19.11.29.)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 1)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 보완 요청 권한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6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2)
  -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금액 조정
    - 1)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신설)
    - 2) 과태료 금액지침\*( '19.2.)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개정)

## 2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0. 18.                      • 마감일자 : 2019. 11. 27.
-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유사한 업종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식품제조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소분·판매업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다류·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지속되고 있는 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영업자가 여러 개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한 번의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으로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제2호, 제52조제4항제2호)
  - 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23)

##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0. 18.                      • 마감일자 : 2019. 11. 27.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정량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7.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0. 18.                      • 마감일자 : 2019. 11. 27.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등을 정비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 분류코드 및 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시행예정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등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삭제함.
  - 나.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해당 서식에서 삭제함.
  - 다.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함.
  - 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를 반기 동안 근무한 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함.
  -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18.                      • 마감일자 : 2019. 11. 27.
-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튜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전원 전

기장치를 튜닝 승인 항목으로 추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튜닝 승인대상에 고전원 전기장치 항목 추가(안 제55조제1항제2호)

**29.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18.
- 마감일자 : 2019. 11. 27.

○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66호, 2019. 8. 27. 공포)됨에 따라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 1) 항공안전의무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 제10항제2호)
- 2)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 정보의 수집·저장·통합·분석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제10항제5호)

**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18.
- 마감일자 : 2019. 11. 29.

○ 대학의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을 이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와 실업자의 내일 배움카드제도를 통합하여 제도 개선하고자 하며 건설일용근로자 수급 요건 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훈련비 지급 신청 시기 변경(안 제60조)

1) 대학이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61조)

1) ‘20년 도입되는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조문정정(안 제92조)

1)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개정(’ 19.1.15공포, ’ 19.7.16시행)에 따라 위임조문인 시행령 조문이 삭제되어 시행령을 위임받은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정비(안 제105조제1항)

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19.1.15 공포, ’ 19.7.16 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9조, 별지 제97호서식)

1)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바. 정당한 이직사유 추가(별표2)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19.1.15일 신설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1)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에 표기된 근거 법령 정정 및 민원인의 작성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이동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3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21.                      • 마감일자 : 2019. 12. 2.
- 연도 중반에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의 중간점검을 위하여 모든 기관에 부과하던 서류제출 의무를 점점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서류의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구체화 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 3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21.                      • 마감일자 : 2019. 12. 2.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예·결산 보고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보완하고, 연도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기간범위 및 제출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중 소규모 시설의 장이 예·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 나.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6월30일)로 규정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 (안 제24조제2항)

### 3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 예고일자 : 2019. 10. 21.                      • 마감일자 : 2019. 12. 2.
-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역병 귀가자 중 질병완치자 조기 재신체검사 실시(안 제26조)

- 1)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 후 귀가 시 치유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유기간이 경과하기 전 질병이 완치된 경우 조기 재신체검사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지요원 휴가 일수 조정 및 성실복무자에 대한 연가 가산일수 확대(안 제59조)

- 1) 사회복지요원 복무 중 가족 사망 시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사회복지요원이 전체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회만 사용하는 경우 성실히 복무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존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함.

다. 사회복지요원 보수지급 기준 조정(안 제62조)

- 1) 사회복지요원 봉급은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계급 체계 조정과 맞춰 사회복지요원의 보수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라. 전·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입양자 포함(안 제130조)

- 1) 전·공상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의 자녀 중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가능하도록 함.

마.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확대(안 제134조)

- 1)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판정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악성 혈액질환을 추가하여, 신체적 취약대상에 대한 병역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4조, 안 제135조)

- 1) 장애등급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



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고시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 시 고시방법(안 제97조제7항 신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자, 사유 및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함.

나.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

1)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다. 기반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1) 기반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운전면허시설로 변경함.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안 제52조제1항)

1)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설치에 대한 내용 중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축소 또는 1미터 이내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

### 3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21.                      • 마감일자 : 2019. 12. 2.
- 혁신적인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용어 변경 (제9조)
    -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 나. 규제 개선 (제16조)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규정 삭제
  - 다. 별지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제6호, 제9호, 제10호)
    - 1) 용어 변경(기타형 → 창의·혁신형)에 따른 서식 문구 변경

###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0. 22.                      • 마감일자 : 2019. 12.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8.3.27., 시행’ 20.1.1.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기존 질환특성에 따라 분류된 ‘제1군 감염병 및 제4군 감염병’에서 재난관리 중심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22.                      • 마감일자 : 2019. 12. 2.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37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단축하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및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사항을 완화하고, 장례식장 폐업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제9조제1항)

- 1)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나.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완화(제12조제3호)

- 1)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봉분 또는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인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다. 가족묘지등의 변경 허가 사항 완화(제13조제3호)

-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에 매장된 유골의 봉안기간 단축(제24조제1항)

- 1)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마. 보존묘지등의 지정절차 정비(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1) 보존묘지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22.                      • 마감일자 : 2019. 12. 2.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

도하기 위하여 매장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37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비하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단축하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사항 및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사항을 완화하고, 장례식장 폐업 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제20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23호의4서식)

1)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례식장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 완화(별표 3 제2호가목)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갖추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각각 2개 이상 갖추도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학습교구 기준을 완화함.

다.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3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0. 22.

● 마감일자 : 2019. 12. 2.

○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어업경영체등록업무처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제 운영 중 미비한 사항(행정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해 보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3조 9항 신설)

- 1) 등록요령의 법적근거가 부여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등록업무의 예측성을 높이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제공

나. 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접수증의 발급(안 제3조 제5항 개정)

- 1) 경영체 등록 신청 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접수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접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대한 증명서 등의 발급(안 제4조의7 신설)

- 1) 증명서 등의 교부 조항을 신설·통합하여 발급절차에 대한 방법 등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 미비서류 보완·신설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1) 등록과 변경의 주체를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화(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 2) 등록절차에 대해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제3조제6항부터 제8항신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마. 기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재·개정(일부개정 11, 신설 3)

#### 4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23.                      • 마감일자 : 2019. 12. 4.

○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업무를 위임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환경부에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 특성에 맞게 위임(제35조)

- 1) 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모델링 검토 업무 위임, 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 위임

나.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별표 8)

- 1) 물환경분야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을 규정

#### 4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0. 23.

• 마감일자 : 2019. 12. 2.

○ 산지경관과 관련 없는 지하부 토석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1)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안 제32조, 제32조의4)

1)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다. 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2조의2)

1) 공공성을 지닌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1)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마.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 1)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바. 규제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52조의2)

- 1)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정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사.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기준 정비(안 별표 2)

- 1)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아. 숲길 설치조건 완화(안 별표 3의3)

- 1)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이 필요한 보행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이용자가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지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길의 너비를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 확대(안 별표 5)

- 1)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018. 4. 9.) 결과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차. 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 1) 산지경관과 무관한 지하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토석채취허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4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0. 23.

• 마감일자 : 2019. 12. 2.

○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확대하고 국유림 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을 완화하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1)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안 제10조)

1)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하고자 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1)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등에 반입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서 인근 주민 등의 동의서 제외(안 제26조)

1)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시 인근 주민 등의 동의서가 필요없음에도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국유림 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

- 1) 국유림 내 토석 매각 시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던 것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감정평가 기간을 줄여 민원처리기간을 개선하고자 함.

바.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안 별표 1의3)

- 1)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평균경사도 측정 시 이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의 축적을 1/5,000 이상에서 더 정밀한 지형정보를 담고 있는 1/1,000 이상으로 정비하고,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없는 경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도록 개선하여 대규모 공공측량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산지전용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기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측량을 통한 수치지형도 작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사.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안 별표 1의4)

- 1)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자 함.

####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10. 23.

• 마감일자 : 2019. 12. 2.

- 지주회사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확립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 1)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맞게 하나의 손자회사를 하나의 자회사가 지배하도록 손자회사에 대한 최대출자자 요건을 정비함

나.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17조의8제3항제2호 삭제)

-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함

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

- 1) 공시의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수준을 적용함
- 2)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여 정정 공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3) 지연 공시 또는 정정 공시의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정함

라.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경과규정 정비(안 부칙 제27529호)

- 1) 자산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정비함

#### 4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24.
- 마감일자 : 2019. 11. 4.

○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조정(안 별표 3의2)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인 이상으로 수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5)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4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0. 24.
- 마감일자 : 2019. 12. 3.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이격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 요건을 개선하고,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일부 영업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포장 예외대상을 확대하되 이들이 생산하는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인증받은 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하는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안 별표 10)

- 1)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함
- 2) 건물이 가축사육 시설과 이격되도록 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안 별표 13)

-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하도록 함.
- 2) 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 예외하도록 하며, 이

- 경우 달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3)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이미 선별·포장 처리한 계란을 구매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는 예외하도록 함
-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 제출 의무 신설(안 별표 13)
-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선별포장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안 별표 14의2)
- 1) 안전관리기준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하도록 함
  - 2)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미실시한 경우 인증취소를 현재 가열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도록 함.
- 마. 기타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안 별지 제36호서식, 안 별지 제42호서식)
- 1)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를 추가함
  - 2) 품목제조보고서에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을 기재하도록 함
  - 3)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함
  - 4)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에 의뢰인, 농장 인증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함

####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0. 24.
  - 마감일자 : 2019. 12. 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4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25.                      ● 마감일자 : 2019. 12. 4.
- 새로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과 오염물질을 규정하는 한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 적용대상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 설정(안 제2조)
    - 1)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연면적 기준을 현행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인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 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개편(안 제4조의2)
    - 1)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 필요
    - 2)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외에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 다.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 및 물질 규정(안 제4조의3)
    - 1)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 엄격한 유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 2) 강화된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폼알데하이드 등 3종으로 규정
  - 라. 법적 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 1)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미부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 2)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

#### 4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25.                      • 마감일자 : 2019. 12. 4.
- 지하역사의 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대중교통차량의 주기적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 )됨에 따라, 지하역사에 설치되는 공기질 자동측정기기의 종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물질 및 측정대상차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 1) 법률에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측정대상물질 및 측정기기설치 위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측정대상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로, 설치 위치는 지하역사 승강장으로 규정
  - 나.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3)
    - 1) 법률에서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에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측정대상오염물질은 PM-2.5 및 이산화탄소, 측정대상차량은 운송사업자별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100분의 20, 측정횟수는 1년에 1번, 측정결과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 시 종이서류 보존 의무를 면제
  - 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안 제7조의4)
    - 1) 법률에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환경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

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완·강화하여 환경부령으로 규정

2)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간이측정기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미세먼지(PM-10)

라.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 규정(안 제7조의5)

1)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를 공기청정기로 규정

마.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존 의무의 면제(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률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 관리자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2) 이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전산 입력 시서류 보존의무를 면제

바.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체계 마련(안 제12조)

1) 시·군·구 및 시·도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2) 이에 시·군·구 및 시·도에서 실시한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시·군·구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에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4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10. 25.

● 마감일자 : 2019. 12. 4.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의 매각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 해당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지신탁한 주식의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경

우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직위 변경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제한되는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당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 보유·신탁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안 제14조의11제1항, 제14조의11제5항 신설,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 1)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된 직무 관여 금지
- 2)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고위공직자 등에게 직위변경 신청을 권고
- 3) 보유 또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거나 직무회피가 불가능하여 직무에 관여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 개선 및 위반제재 강화(안 제14조의5제6항, 제14조의5제7항)

-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9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 1)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 2) 연차보고서 기재사항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사항을 포함

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 제한 및 부정 청탁·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임요구 근거 마련(안 제19

조제1항)

5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9. 10. 25.                      ● 마감일자 : 2019. 12. 4.
- 여권 분실과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발급하는 여권의 종류를 일원화하고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내외 여권분실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자 삭제(안 제16조 제2,3호)
  - 나.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제39조 별표)

5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25.                      ● 마감일자 : 2019. 12. 4.
-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좀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개정)
- 주요내용
  - 가. 타 지역 거주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 접수(안 제35조의6 개정)
    -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